

사슴자가도축 법적가능길 열린다

—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서 농장내 자가도축 허용 —

사슴을 농장내에서 자유롭게 도축,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5월15일 ‘농림부 공고 제 2003-47호’를 통해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 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자유롭게 도축,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요지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공고문을 발표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생산자단체나 관련인들의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채택되게 된다.

이 공고문을 해석해보면 사슴의 경우 농장내에서 소비자가 방문할 시 위생적으로 자가 도축, 소비자에게 중탕 가공 및 사슴육 조리 등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농장방문에 의한 양육산물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사슴농가들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합법적으로 자가도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탕가공품의 유통, 혹은 진열 판매를 위해 도살하는 경우에는 정식 도축장에서 도축한 원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본회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농가내에서 현행처럼 자유롭게 사슴을 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자유

로운 도축이 가능하더라도 농가 스스로 청결한 도살 및 안전한 폐수 처리를 실시하는 등 위생 문제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에 축산물위생감시 강화 내용이 포함된 측면도 있지만 농가 스스로 위생문제를 지켜 나가지 않아 민원 등이 다발할 경우 규제성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본회는 지난해부터 “영세농가의 소득 증대 일환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농장자체 중탕가공 판매, 또는 소비자 그룹단위 농장방문 구매가 중단되어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농장내 자가중탕 가공의 경우 자가소비의 개념으로 인정하여 자가도축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한국양육**